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단55107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남지혜, 방인석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4. 7. 19.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670,691원 및 그 중 27,670,581원에 대하여 2023. 11. 9.부터 2024. 4. 9.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4. 11. 체결된 매매계약은 27,670,69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7,670,6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21. 1. 22.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① 20,000,000원과 ②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과 신용보증금액을 ① 19,000,000원과 ② 9,5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21. 1. 25. C은행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23. 6. 7. 폐업신고를 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23. 11. 9. C은행에 28,177,711원(= ①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19,507,645원 + ②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8,670,06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507,130원(= ① 보증료환급금 377,600원 + ② 보증료환급금 129,530원)을 환급받았다.

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8%,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환급받은 307,130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10원이다.

마. 피고 A은 2023. 4. 11.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177,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3.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27,670,691원[= 대위변제 미수금 27,670,581원(= 28,177,711원 - 보증료환급금 507,130원) + 확정손해금 1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 미수금 27,670,58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3.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4. 4. 9.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3. 피고 이유진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3. 4. 11.에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불과 57일이 경과한 2023. 6. 7. 피고 A의 폐업신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가까운 시일 내에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사정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 A의 사해의사

앞서 본 피고 A의 재산상태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시 등에 비추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되다.

라. 피고 B의 선의항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재산상황이나 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을나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A을 알았다거나 피고 A과 특별한 인적 관계, 경제적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 B이 피고 A에게 다른 채무가 있었음을 알 만한 사정도 보이지도 않는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피고 B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당시 인근 부동산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적절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④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 50일 후에 다른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그 경위에 대해 배우자의 공장부지 매매대금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 B의 배우자 D은 2021. 10. 18. 화성시 E 공장용지 4,598㎡를 2,04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대부분을 남편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이체된 돈의 대부분은 공장부지 매매잔금으로 사용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형우

별지